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

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2019. 8.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6호, 2019. 8. 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시점검과), 044-200-4874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 나.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 라.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 마. 허위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 중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그 거래금액에 따라 기본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비율 적용 없이 기본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공시지연 일수, 위반사유 및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IV. 삭제

V.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위반 유형				기본금액 (단위: 만원)
이사회 의결 여부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공시사항 누락 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5,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한 경우	2,0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 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00원 씩 가산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한 경우	5,000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 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00원 씩 가산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7,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	5,0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5,000
			누락한 경우	7,000
			허위로 공시한 경우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거래금액	적용비율(%)
100억원 이상	100.0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90.0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80.0
4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70.0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60.0
20억원 미만	50.0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 (1)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 (2) 사업자별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 가중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 (1)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
- (2) 계열 금융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0%
- (3)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사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 50%
-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또는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 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행위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6호, 2019. 8. 1.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